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368
----------	-------

발의연월일 : 2025. 12. 18.

발 의 자 : 서영석 · 소병훈 · 서미화
김선민 · 이수진 · 이해민
김남희 · 남인순 · 노종면
전진숙 · 최혁진 · 박지원
김 윤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양사가 감염병에 감염된 경우 면허를 발급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 규정된 감염병의 범위가 불명확하여 영양사의 업무진입에 큰 제한으로 작용되고 있음. 또한 영양사가 업무를 하다가 감염병에 감염되면 면허가 취소되고, 1년간 다시 면허를 받을 수 없어 영양사 업무에 큰 장애가 되고 있음.

이에 영양사 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하는 감염병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업무종사 일시제한 대상이 되는 감염병으로 규정하고(안 제16조) 업무를 수행하다 감염병에 걸린 경우 면허를 취소하던 것을 해당 감염병이 소멸될때까지만 면허를 정지하도록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21조).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영양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에 따른 업무 종사의 제한을 받는 감염병환자

제21조제1항제1호 중 “제1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를 “제16조제1호 또는 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지”를 “정지(다만, 제3호의 경우는 감염력이 소멸되는 기간으로 한다)”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6조제2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양사 결격사유에 대한 특례) 이 법률 시행 당시 개정 전 제16조제2호에 해당하여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라 면허가 취소되어 있는 영양사에 대해서도 제16조제1항 및 제21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영양사의 면허를 받을 수 없다.</p> <p>1. (생 략)</p> <p>2. 「<u>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u>」 제2조제13호에 따른 <u>감염병환자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u></p> <p>3. 4. (생 략)</p> <p>제21조(면허취소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영양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p> <p>1. <u>제1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u></p> <p>2. 3. (생 략)</p> <p>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영양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면허의 <u>정지</u>를 명할 수 있다.</p>	<p>제16조(결격사유) ----- ----- -----.</p> <p>1. (현행과 같음)</p> <p>2. 「<u>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u>」 제45조제1항에 따른 업무 종사의 제한을 받는 <u>감염병환자</u></p> <p>3. 4. (현행과 같음)</p> <p>제21조(면허취소 등) ① ----- ----- -----. ----- -----.</p> <p>1. <u>제16조제1호 또는 제3호</u>----- ----- --</p> <p>2. 3. (현행과 같음)</p> <p>② ----- ----- ----- ----- <u>정지(다만, 제3호의 경우는 감염력이 소멸되</u></p>

<p>1. · 2. (생략) <u><신설></u> ③ ~ ⑤ (생략)</p>	<p><u>는 기간으로 한다)---</u>. 1. · 2. (현행과 같음) 3. <u>제16조제2호에 해당하게 된</u> <u>경우</u> ③ ~ ⑤ (현행과 같음)</p>
---	--